

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“쉽고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”

국가 R&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

I 규제혁신추진단, 국가 R&D 성과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

대한민국 정부 R&D 예산 30조 시대,
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는 우수하나
여전히 R&D 성과의 활용·확산 노력이 요구

22년 블루버그
혁신지수 1위

규제혁신추진단, 국가 R&D 성과가
실용화·사업화·창업으로
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



I 규제혁신 주요 사례

사업화·창업

▣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기준 완화

현행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
부처 법령마다 상이

개선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A법 10%, B법 20% → 10% 통일

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▣ 임직원의 휴직·경직 기간 확대

현행 연구원 등이 기술사업화 회사 창업 혹은
임직원으로 갈 경우, 현 기관(공공연구소 등)의
휴직·경직 허용기간이 정부부처마다 상이

개선 현 기관의 휴직·경직 기간을 연수소 최대 6년까지 허용

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특허 생산성

▣ 우수특허 창출 지원

현행 과도한 특허 출원·심사·유지에 따른
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

개선 특허 평가는 양적 지표에서 질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
및 미활용 특허 처분의 자율성 부여(특허 포기 등)

* 23년 상반기 개정 예정

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

▣ ‘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’ 설치 의무 폐지

현행 기관 내부에 R&D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
전담조직 설치는 필수로 형식적 운영사례 발생

개선 내부 전담조직 설치 규정을 폐지하여 기관 자율성 강화

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기술이전방식

▣ R&D 기술이전방식 확대

현행 공공(연) 보유기술의 이전방식은
'통상실시'(non-exclusive license)만 허용

개선 기술 특성,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
기술이전방식 확대
(통상실시, 전용실시, 양도 등)

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

기술료

▣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 징수

현행 R&D 기술이전에 따른 '기술료'의 정의가
'금액'으로 명시되어
주식 등으로 징수 가능 여부 모호

개선 다양한 형태로(현금, 주식 등)
징수 가능

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